

# 5년간 10명 중 4명꼴 중도포기... 취업해도 고용 질 낮아

## IPP형 일학습병행제 이대로 괜찮나

〈下〉 총체적 부실인데 정부는 “육성”

1년동안 고용유지율 64% 불과  
노동법 위반하고 폐업하는 곳도

‘장기현장실습형’ 폐지 가시화  
‘일학습병행제’는 지속 추진  
예산 낭비, 미스매치 등 우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가 학생들의 잦은 이탈과 다수 사업장 내 노동법 위반, 고용유지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가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을 모델로 도입한 장기현장실습(IPP)은 예산을 대폭 줄여 폐지 수순을 밟는다. (메트로신문 9월 5일자 1면 참조)

하지만 일학습병행제 중심으로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IPP가 ‘취업가능성’ 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약 12억 삭감하기로 하고 ‘훈련 시작부터 취업과 연계되는’ 일학습병행제 위주의 예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도포기율 5년간 30%대·20% 후 반대 지속

10일 메트로신문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일학습병행제가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중도포기율은 28.7~35.3% 대로 10명 중 3~4명꼴로 중단하고 있다. 2015년 35.5%, 2016년 31.6%, 2017년 31.8%, 2018년 28.7%로, 평균 31.9%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학습근

로자 중 21.1%가 중도에 훈련을 포기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명중 1명이 중도이탈 한 셈이다.

이들은 이직 등 퇴사 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 이어 ▲진학·입대 ▲상병 ▲기업사정 ▲기타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제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 예컨대 ‘진학·입대·상병’ 등은 중도포기율 상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이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낮은 고용유지율, 다수 사업장

내에서 노동법 위반 등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습근로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64%에 그쳐 고용의 질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같은 기간에 훈련 도중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이 폐업·도산한 곳이 408곳이나 됐고, 기업 사정으로 도중에 훈련을 포기해야 한 학습근로자도 1228명이나 됐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무려 1053개에 달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소키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학습기업 선정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중도탈락율을 감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우수·우량 기업의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 IPP대신 일학습병행제 초점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정책 방향을 ‘일학습병행제’ 중심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텍을 모델로한 ‘IPP’는 폐지수순으로 가는 가닥이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IP

P형 일학습병행제’ ‘IPP’와 ‘일학습병행제’로 나뉜다.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의 장기현장실습제(IPP)를 모델로 했다. 앞서 본지는 고용노동부는 장기현장실습제(IPP) 예산을 삭감하며 폐지수순을 밟는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IPP에 대한 올해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줄이고 지원인원도 각 대학 100명에서 70명으로 축소하기로 한데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애초 IPP관련 예산이 약 59억 2000만원이었는데 IPP가 ‘취업가능성’ 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약 12억 삭감하기로 하고 훈련 시작부터 취업과 연계되는 일학습병행제 위주의 예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IPP는 코리아텍이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실시했다. 그러나 IPP가 대학과 기업의 고용 미스매치 등의 문제, 취업과의 연계율이 적다는 부작용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실제로 IPP제도에 대한 국내 첫 논문인 ‘장기현장실습제도를 통한 인력채용 효과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기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대학·기업 공동참여’가 가장 큰 개선방향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적합한 인재 파견’ 등의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IPP의 중도탈락율은 일학습병행제와는 달리 1%대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제재 1년’ 날개 꺾인 진에어, 정부에 해제 요청 편법증여에도 금융당국 규제는 ‘빈칸’

## 신규 노선 불허 등에 경영 ‘비상’ 당국 “최종보고서 검토 후 결정”

1년 넘게 신규노선 불허 등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진에어는 지난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뒤 그가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경영 제재가 가해졌다.

국토부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진에어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 올해 2월 몽골·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지난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기회를 날렸고, 다른 항공사들이 공격적으로 새 항공기를 들여오며 투자를 확대할 때도 진에어는 이미 들여와 도색까지 마친 항공기도 제때 투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 경영문화 개선을 통한 제재 완화를 협의해왔다. 올해 3월 진에어 회장직을 맡고 있던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고, 이사회를 사외이사(3인)가 사내이사(2인)보다 많은 구조로 바꾸는 등 경영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에어 노사가 한목소리로 제재 철폐를 호소하자 국토부도 진에어의 각종 노력을 고려해 제재 완화를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다시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

영에 복귀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 근거로 삼았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토부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조도 당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진에어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복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진에어는 “올해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서 배제되는 등 국토부 제재 영향으로 2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항공 연합 및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수요까지 급감하며 경영전락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 철회를 호소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최근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제재 완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 ▶▶ 1면 ‘익명의 그들’서 계속

이는 PEF가 공사와 회계감사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PEF의 감사는 LP의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PEF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운용을 담당하는 GP(자금지행사원)와 LP가 주기적으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EF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돈을 다 잃어도 온전히 LP의 책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편법증여의 도구

하지만 PEF와 LP가 한 편일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의 자격은 자본금 1억원과 2명의 운용역만 있어도 갖출 수 있다. 헤지펀드 운용자격(자본금 10억 이상, 운용역 3명 이상 등)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마음만 먹으면 LP가 입맛에 맞는 GP를 구성해 PEF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제는 PEF가 자본가들의 편법증여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통해 이 같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물론 조 장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PEF의 운용보수는 통상 1~2%, 성과보수는 20~30% 수준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이 역시 LP와 GP간 자율 영역이다. 오히려 PEF의 운용보수가 공모펀

드보다 낮은 0.2% 수준에서 책정될 수도 있다.

편법증여의 방법은 이렇다. 적은 운용보수를 설정한 다음 자본가 A씨가 10억을 투자하고,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한다. 5000만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이후 A씨는 펀드 만기 전 환매를 요구한다. 이 경우 패널티(불이익)가 발생한다. 원금의 90%를 무는 식이다.

A씨는 9억원을 포기하고 펀드를 환매한다. 그리고 펀드가 클로징 됐을 때 A씨의 패널티 9억원은 남은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A씨의 자녀(2명)가 각각 4억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법에 대해 금융당국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PEF가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에 활용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증여세 문제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세제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PEF의 자금은 계속 투자돼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낼 지, 손실을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에 활용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감독당국이 아니라 세제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